

□ 공고 제2019-22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9. 3. 1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5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진료부) 제3항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제23조(적정진료팀) 및 제4호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별표 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직종 등)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인사규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당직근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당직의 편성) 제2항 제2호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진료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보고) 제2항 제3호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⑤의무기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제15조(의무기록의 사본발급 및 절차) 제7항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⑥의한협진센터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협진기록관리부서) 제2항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⑦적정진료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구성) 제1항의 “의무기록실장”을 “의료정보관리실장”으로 한다.

⑧제규정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18조 (진료부) ① ~ ② (생략) ③제2항의 각 센터 및 진료과의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복지팀, 건강검진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수술실, 중화자실,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구강보건실, 심사실, 의무기록실을 두며, 각 진료과에 별도로 필요로 하는 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제23조 (적정진료팀) 적정진료팀에는 심사실과 의무기록실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 4.의무기록실 가. ~ 다. (생략)</p>	<p>제18조 (진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각 센터 및 진료과의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복지팀, 건강검진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수술실, 중화자실,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구강보건실, 심사실, 의료정보관리실을 두며, 각 진료과에 별도로 필요로 하는 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제23조 (적정진료팀) 적정진료팀에는 심사실과 의료정보관리실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4.의료정보관리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p> <p>①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직종 등)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p> <p>②인사규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p> <p>③당직근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당직의 편성) 제2항 제2호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1)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p> <p>④진료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8조(보고) 제2항 제3호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p> <p>⑤의무기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간사)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p> <p>제15조(의무기록의 사본발급 및 절차) 제7항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p> <p>⑥의한협진센터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협진기록관리부서) 제2항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p> <p>⑦적정진료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구성) 제1항의 “의무기록실장”을 “의료정보관리실장”으로 한다.</p> <p>⑧제규정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의 “의무기록실”을 “의료정보관리실”로 한다.</p>

[별표 1] <현행>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88	1	67	6	39	100	186	166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0		66	4	33	87	161	149	20
		의무직		52		52						
		의 사		46		46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직		90			2	6	19	39	24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일 반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6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3								
		의무기록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6					6	18	42	20
일 반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행정		32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5					2	8	12	3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3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별표 1] <개정>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종	직급	계	임원	계약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88	1	67	6	39	100	186	166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20		66	4	33	87	161	149	20
		의무직		52		52						
		의 사		46		46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무직(약사/한약사)		14		14						
		간호직(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직		90			2	6	19	39	24	
		임상병리사		20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일 반		치과위생사		7								
		사회복지사		6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86					6	18	42	20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일 반		행정		32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5					2	8	12	3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3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 공고 제2019-23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을 이에
공포한다.

2019. 3. 1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4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 일부개정기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진료실적급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한다.

3. 건강검진 고객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따라 목표급을 지급한다.

가. 건강검진실에서 시행되는 초음파검사는 의사 1인 기준 월 100건
초과 시 초과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

나. 건강검진 전립선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다. 건강검진 자궁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라. 건강검진 심장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4. 의사가 건강검진업무 중 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가금액 중 재료대
를 공제한 행위료 수입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재료대를 공제한
행위료 수입의 3%를 상담료로 지급한다.

7. 안과의사가 건강검진업무 중 OCT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사 1인 기준 월 8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하고, 안저·안압검사의 경우 의사 1인 기준 월 80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판독 수수료의 5%를 지급하며, 눈물샘검사의 경우 수가의 5%를 지급한다.

8. 진료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 (실적평가기준) ① (생략) ② 1.~2. (생략) 3.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장과 건강검진팀에 근무하는 진료과장에게는 1인 기준 초음파검사 월 100건 초과 시 초과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	제5조 (실적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건강검진 고객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목표금을 지급한다. 가. 건강검진실에서 시행되는 초음파검사는 의사 1인 기준 월 10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 나. 건강검진 전립선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다. 건강검진 자궁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라. 건강검진 심장초음파검사 수행 의사 1인 기준 월 15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4. 의사가 건강검진업무 중 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가금액 중 재료대를 공제한 행위료 수입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재료대를 공제한 행위료 수입의 3%를 상담료로 지급한다 5. ~ 6. (현행과 같음) 7. 안과의사가 건강검진업무 중 OCT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사 1인 기준 월 8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5%를 지급하고, 안저·안압검사의 경우 의사 1인 기준 월 800건 초과 시 초과 건수에 대한 판독 수수료의 5%를 지급하며, 눈물샘검사의 경우 수가의 5%를 지급한다. 8. 진료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수수료의 5%를 지급한다.
4. 진료과장이 건강검진업무 중 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가금액 중 재료대를 공제한 행위료 수입의 10%를 지급한다.	
5. ~ 6. (생략)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4,3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8,580	
외 과	85,000	11,050	
신경외과	60,000	7,800	
정형외과	100,000	13,000	
재활의학과	80,000	10,400	
신경과	60,000	7,800	
산부인과	30,000	3,900	
소아청소년과	25,000	3,250	
안 과	40,000	5,200	
이비인후과	40,000	5,200	
비뇨기과	65,000	8,450	
피부과	40,000	5,200	
치 과	40,000	5,2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3,900	
건강 검진팀	내 과	250,000	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150,000	직업환경의학과 전체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3%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00	
영상의학과		9,100	
마취통증의학과		3,250	

-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급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

[별표 1] <개정>

과별 진료목표액

(단위 : 천원)

진료과별	월간 목표액 (또는 인원)	목표급 상한액	비고
내 과	110,000	14,300	
정신건강의학과	66,000	8,580	
외 과	85,000	11,050	
신경외과	60,000	7,800	
정형외과	100,000	13,000	
재활의학과	80,000	10,400	
신경과	60,000	7,800	
산부인과	30,000	3,900	
소아청소년과	25,000	3,250	
안과	40,000	5,200	
이비인후과	40,000	5,200	
비뇨기과	65,000	8,450	
피부과	40,000	5,200	
치과	40,000	5,200	
한방과 및 한의원	30,000	3,900	
건강 검진팀	내 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300,000 일 60명 (대장내시경 30명)	13,000 (의사1인 기준) 종합검진 근무의사 (치과제외) 전체
응급실	월 750명	목표액 13%	응급실 전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2,600	
영상의학과		9,100	
마취통증의학과		3,250	

* 공중보건의는 진료목표액 산정에서 제외함

* 응급실 월간목표액은 월간목표인원에 매월 행위료 수입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봉계약자(진료실적급 대상)에게 균등지급한다.

[별표 2] <현행>

목표달성을 따른 지급률

목표달성을	지급률	산출기초
130%초과	7.0%	○ {달성실적 - (120%까지 적용 실적)}을 공제한 후 남은실적을 해당구간별로 해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출
120%초과	8.0%	
120%	9.0%	
110%이상	8.0%	
100% 이상	7.0%	
95% 이상	6.5%	
90% 이상	6.0%	
85% 이상	5.5%	1. 달성실적이 120%미만인 경우 • {달성실적-(월간목표액 50%)} × 구간지급률
80% 이상	5.0%	2. 달성실적이 120%이상인 경우 • {(월간목표액×120%)-(월간목표액 50%)}× 9%
75% 이상	4.5%	
70% 이상	4.0%	
65% 이상	3.5%	
60% 이상	3.0%	
55% 이상	2.8%	
50% 이상	2.5%	
50%미만	0.0%	

※ 간접진료의사 지급률은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사료의 0.73%,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료의 11.0%로 하며, 영상의학과는 방사선료의 2.25%로 하되 전수판독 시에는 2.5%로 한다. (영상의학과 전수판독 시 지급율 차액분은 개인별 판독량에 따라 지급)

※ 달성실적 적용 시 50% 미만 실적은 공제한 후 산정한다.

[별표 2] <개정>

목표달성을률에 따른 지급률

목표달성을률	지급률	산출기초
130%초과	7.0%	○ {달성실적 - (120%까지 적용 실적)}을 공제한 후 남은실적을 해당구간별로 해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출
120%초과	8.0%	
120%	9.0%	
110%이상	8.0%	
100% 이상	7.0%	
95% 이상	6.5%	
90% 이상	6.0%	
85% 이상	5.5%	1. 달성실적이 120%미만인 경우 • {달성실적-(월간목표액 50%)} × 구간지급률
80% 이상	5.0%	
75% 이상	4.5%	2. 달성실적이 120%이상인 경우 • {(월간목표액×120%)-(월간목표액 50%)}× 9%
70% 이상	4.0%	
65% 이상	3.5%	
60% 이상	3.0%	
55% 이상	2.8%	
50% 이상	2.5%	
50%미만	0.0%	

- ※ 간접진료의사 지급률은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사료의 0.73%,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료의 11.0%로 하며, 영상의학과는 방사선료의 2.25%로 하되 전수판독 시에는 2.5%로 한다. (영상의학과 전수판독 시 지급율 차액분은 개인별 판독량에 따라 지급)
- ※ 달성실적 적용 시 50% 미만 실적은 공제한 후 산정한다.
- ※ 건강검진팀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별표1]과별 진료목표액 중 목표급 상한액은 적용하되 [별표2]목표달성을률에 따른 지급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 종합검진 담당의별 월별 검진 상담건수에 매월 종합검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수입의 0.5%를 지급한다.